
보도자료

- 제공일 : 2005. 6. 1
 - 제공자 : 농림부 가축방역과
 - 과 장 : 김 창 섭
 - 사무관 : 장 기 윤
 - 전 화 : 02-500-1936~37
-

이 자료는 2005년 6월 일 (조간,석간)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제목 : 한미 3차 BSE 전문가 회의 미국 현지조사와 함께 실시

-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과 관련 제3차 BSE 전문가 협의회를 현지조사와 병행하여 오는 6.6~6.10까지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6.1일 밝혔다.
 - 이번 회의에는 농림부 가축방역과장(김창섭)을 대표로 대학과 검역원 전문가 10명이 참석하여 그동안 미국과 가졌던 2차례의 전문가 회의와 지난달 실시한 NGO 관계자의 미국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
- 현지조사는 BSE 실험실, 소사육 농장, 사료공장, 도축장 등을 방문하여 그동안 미정부가 규정한 일련의 BSE 제발 방지 조치의 이행실태를 검증한 후
 - 반추동물 사료규제 및 교차오염 방지조치, 감염소를 유효하게 색출해 낼 수 있는 예찰프로그램, 도축장·가공장에서의 SRM 처리, 소 개체식별 시스템 등에 대해 그동안 협의 과정중 제기되었던 사항을 최종 마무리 할 계획임

□ 이번 3차 전문가협의회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등에 대해 정리되면 『미국내 BSE 위험평가』 결과를 6월말 “가축방역협의회”에 상정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양국간 고위급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.

○ 양국간 고위급 협상에서는 도축월령 제한, 뼈있는 쇠고기의 가공 기준과 SRM의 범위 등 위생조건을 주로 다룰 전망이다

미국산 쇠고기 BSE관련 설명자료

2005. 5. .

농 립 부

"농업·농촌사랑!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힘!"

1. 제1차 전문가협의회 결과

□ 협의회 개요

- 일시 및 장소 : '05.2.28, 11:00~16:00, 검역원
- 참석자
 - 우리측 : 가축방역과장, 질병관리본부 방역과장, 검역원 과장 2명, 건국대 이중복 교수, 경북대 안수환 교수 등 6명
 - 미 측 : Patrick Clerkin 기술자문관 등 7명

□ 협의회 결과

- 우리측은 국내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
 - 전문가협의회, 가축방역대책협의회, 당국자 협상 등이 필요함
- 미국측은 '04.6월부터 강화하여 시행중인 BSE예찰 프로그램의 내용, 일본과 2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설명
 - 가능한 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가 진행되기를 희망
- 1차 협의회는 전반적으로 상호 입장을 탐색하는 수준에 그쳤고, 후속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함.
 - 미측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고, 우리측도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나 요청할 자료 목록을 미측에 제시

2. 제2차 전문가협의회 개최결과

가. 미국소가 BSE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

□ 미국내 BSE 위험도

- 한국측은 미국이 BSE가 발생하는 국가로부터 생우 및 육골분을 수입한 적이 있기 때문에 BSE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
- 미국측은 하버드 BSE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감염원이 미국에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현행 사료규제 등 강화된 BSE 방역조치에 의해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라고 설명
 - 미국측은 영국산 수입 생우(334두)를 추적조사하여 생존이 확인된 소(151두)를 검사한 결과 모두 BSE 음성이었던 것으로 확인
 - 캐나다산 수입 소 1두 양성인 확인된 후 현재까지 32만두 이상의 소에 대한 강화된 BSE 예찰조사 결과, 한 건도 양성축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미국의 BSE관리제도가 잘 수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며, 미국은 자국에서 태어난 소에서 BSE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

□ BSE 감염 방지를 위한 반추동물 사료규제 및 사료공장에서의 교차오염 방지 조치

- 한국측은 현재 미국이 소를 제외한 닭·돼지 등에게 반추동물 육골분을 급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닭·돼지용 사료에 포함된 반추동물 육골분이 생산·유통 및 급여과정에서 반추동물 사료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
 - 미국내 BSE 원인체가 순환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SRM(특정위험물질)을 모든 동물용 사료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

- 미국측은 소 사료에 소의 육골분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 생산라인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사료제조 전후에 세척토록 하는 한편, 사료공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
- 한국측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사료 안전조치의 이행상황을 확인한 후 다음 회의 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
 - 아울러 모든 축종의 동물용 사료에 SRM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규정('04.7월 입안예고)을 조속히 시행토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함

나.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

□ 감염된 소를 색출해 내는 목적 예찰프로그램(Targeted Surveillance Program)

- 한국측은 미국에서 '04.6월부터 12~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예찰강화 프로그램의 기간을 연장하는 등 검색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
 - 미국측은 예찰강화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며, 강화조치를 중단하더라도 종전보다는 높은 수준의 예찰을 시행할 것임을 언급
- 한국측은 BSE 확진을 위한 검사법과 관련하여 면역조직화학법(Immunohistochemistry; IHC)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EU·일본 등과 같이 웨스턴블롯법(Western Blot; WB)을 병행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
 - 미국측은 IHC 검사가 불가능한 시료에 대해서만 WB을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IHC와 함께 WB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을 언급

□ 도축장 및 가공장에서 특정위험물질(SRM)의 제거와 처리방법

- 한국측은 국제기구(OIE)의 규정이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만 SRM을 제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연령의 소에서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
- 미국측은 감염력 연구 및 미국의 상황에 근거하여 회장말단부와 편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린 소에서 SRM 부위를 제거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
 - 각 작업장에서 HACCP(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) 또는 sSOP(표준 위생관리요령)에 따라 SRM을 제거하도록 하고 미농업부 수의관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있음을 설명
- 한국측은 다음회의시 미국내 SRM 제거의 적정성 검증과 BSE 감염력(tissue infectivity)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을 제안

□ 농장까지 추적이 가능한 개체 식별 시스템

- 한국측은 BSE발생시 신속한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체식별 시스템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
- 미국측은 현재 추진하고 있고 2009년도까지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인 개체식별 시스템을 설명
 - 소가 다른 농장 또는 도축장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가축과 합사되는 경우 등 변경사항을 등록

3. 국내대책 추진상황

가.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

- 이인기 의원('04.6.1, 11인)과 조일현 의원('05.4.4, 32인)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
- 농해수위 및 보건복지위 위원들에 대한 개별 설명(국장, 축산물 위생과장), 양 위원회 연석 당정 간담회('05.3.16) 등 개최
- 조일현 의원이 새로 제출한 개정안은 원산지 이외에 식육의 종류(한우, 육우, 젓소고기 등)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.
 -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등을 표시해야 하는 식당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(동법 제10조의2 신설).
- ※ 영업장 면적이 100㎡ 이상이고 덩어리 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한정할 경우 표시대상은 전체 61만개소 중 10만개소 정도로 추정됨

나.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도입

-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 후 정보를 입력, DB화하여 쇠고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추진중
- '05.2월 판매장에서 쇠고기의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완료(3.30일 시연회 개최, 양재동 하나로클럽)
 - 9개 브랜드(57천두), 30개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인증 마크를 제작·보급 중
- 앞으로 사업 성과를 분석, 보완하여 적용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

미·일, 미·대만간 BSE 협의 결과

1. 미·일간 협의

□ 3차례 전문가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제4차 미·일 고위급 회의 ('04.10.23)에서 쇠고기 수입 재개 조건에 대해 합의

- ① 20개월령 이하로 증명되는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만을 수입
- ② 특정위험부위(SRM)는 모든 월령의 소에서 제거
- ③ 미국은 쇠고기 수출증명(BEV) 프로그램을 마련
- ④ 가능한 신속하게 자국내 승인절차에 착수
- ⑤ 앞으로 BSE 추가 발생되더라도 과학적 근거없이 수입정지로 연결시키지 않음

※ 교역대상을 2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로 한정할 이유

- 일본은 도축되는 전두수에 대해 BSE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동등성원칙에 따라 미국도 전두수를 검사할 것을 요구
- 미국은 전두수 검사가 불가능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
- 양국은 현재의 검사방법으로는 이상프리온이 검출된 사례가 없는 20개월령 이하에 한해서 교역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이에 대해서 '05.7월에 재검토하기로 함.

□ '05.3.31일, 일본 식품안전위원회는 20개월령 이하의 소를 BSE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전두수 검사 완화 대책을 승인

○ 추후 동 위원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조건을 검토할 예정

2. 미·대만간 협의

□ 대만은 미국산 쇠고기의 원칙적인 수입재개 방침을 발표('04.10.26)한 이후, 미국과 3차례의 전문가회의 및 현지 실사 등 실시

○ 미국은 작년 3월말 대만에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

□ 대만 위생부 소속 식품안전위원회 전문가심의를 거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4.16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('05.03.24)

※ '03년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: 19,200톤(76백만불)

< 수입조건 >

① 30개월 이하 월령의 육용품종 소에서 나온 쇠고기일 것

※ 당초 대만은 미국에서 출생, 사육 및 도축한 소에서 유래된 쇠고기만 수입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이후 이를 철회

② 내장·척수·삼차신경절·배근신경절 등 특정위험물질(SRM)을 제거한 쇠고기일 것

③ 미국 농업부가 심사한 이후 대만 위생소에 기통보한 도축장과 가공장에서 도축 및 가공된 쇠고기일 것

④ 쇠고기 수입시 미국 농업부의 위생증명 서류가 첨부된 것일 것

< 수입재개 품목 >

○ 뼈를 제거한 갈비, 허리살, 허리상부살, 둔부(ccc-code 0201.30.10.10-7) 등 16개 품목